

의안번호	제608호
의 결 연 월 일	2014년 1월 24일 (제326회)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14년 1월 8일

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침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608
------------	-----

제출연월일 : 2014년 1월 8일
제 출 자 : 충 청 북 도 지 사

1. 제안사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유재산 교환차금 납부조항 신설(안 제21조의2, 안 제40조의2)
 - 일시납부 곤란 시 연 4퍼센트 이자로 10년 이내 분할납부 가능
- 대부료 이자율 신설(안 제35조)
 - 연간 대부료가 100만원 초과 시 연 4퍼센트 이자로 분할납부 가능
 - 벤처기업의 경우 연 2퍼센트 이자로 분할납부 가능
 -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최초 준공된 건물의 준공일부터 60일이내에 연 2퍼센트 이자로 대부료 납부
-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제40조) 중 제8호 삭제
- 변상금 분할납부 이자율(연 4퍼센트) 신설(안 제63조)
-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연 4퍼센트) 신설(안 제63조의2)

3. 의안전문 : 붙 임

4. 관계법령 발췌 : 붙 임

5.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교환차금의 납부) ① 행정재산의 교환차금은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도내로 이전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에는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연간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이고,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경우 연 2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100만원 초과 : 6개월 이내 3회 분납
2. 200만원 초과 : 9개월 이내 4회 분납

제35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 1항 및 제 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영 제32조제3항의 경우에는 연 2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대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0조제8호를 삭제한다.

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교환차금의 납부) ① 일반재산의 교환차금은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도내로 이전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에는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63조제1항 중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를 “변상금을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로 한다.

제6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과오납된 공유재산의 사용료 · 대부료 · 매각대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반환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장 행정재산 제21조(사용 · 수익허가부의 비치) <u><신 설></u>	제3장 행정재산 제21조 (현행과 같음) <u>제21조의2(교환차금의 납부) ① 행정재산의 교환차금은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u> <u>②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도내로 이전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에는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u>
제4장 일반재산 제1절 대부 제35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생략)	제4장 일반재산 제1절 대부 제35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p>② 영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대부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p> <p>1. 50만원 초과 : 3월 이내 2회 분납</p> <p>2. 100만원 초과 : 6월 이내 3회 분납</p> <p>3. 200만원 초과 : 9월 이내 4회 분납</p>	<p>②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연간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이고,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경우 연 2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p> <p>1. 100만원 초과 : 6개월 이내 3회 분납</p> <p>2. 200만원 초과 : 9개월 이내 4회 분납</p>
<p>〈신 설〉</p>	<p>③ 영 제32조제3항의 경우에는 연 2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대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p> <p>-----</p> <p>-----</p> <p>-----.</p>	
<p>제2절 매각</p> <p>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p> <p>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p> <p>1~7 (생략)</p>	<p>제2절 매각</p> <p>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p> <p>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p> <p>1~7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8. 재산의 위치·규모·형태 및 용도 등으로 보아 당해 도유지 만으로는 이용 가치가 없으나 인접 사유토지와 합친다면 토지의 효용성이 제고될 수 있다고 인정되거나 소규모 도유지 매각을 제한함으로 인하여 인접 대규모 사유지의 효용성이 현저히 저해되는 경우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평정한 가격이 특별시와 광역시의 동지역에서는 2억원 이하, 시의 동지역에서는 1억원 이하, 광역시·시·군의 읍·면지역에서는 5천만원 이하인 토지를 인접 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p> <p>〈신 설〉</p>	<p>〈삭 제〉</p>
	<p>제40조의2(교환차금의 납부) ① 일반재산의 교환차금은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p>

현 행	개 정 안
	<p>②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p> <p>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p> <p>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도내로 이</p> <p>전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에는 연 4</p> <p>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p> <p>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p>
제8장 보칙	제8장 보칙
제63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영 제 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u>변상금을</u> <u>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u> <u>같다</u>	제63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영 제 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u>변상금을</u> <u>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다음 각</u> <u>호와 같이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u>
1~4 (생략)	1~4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p>제63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과오</p> <p>납된 공유재산의 사용료 · 대부료 · 매</p> <p>각대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p> <p>에는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반환한다.</p>

관련 법령 발췌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1조의3(교환차금의 납부) ① 행정재산의 교환차금은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6.21>

②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6.21>

제32조(대부료의 납부기한)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는 대부 전에 미리 내야 한다.

② 법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연간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8.4, 2013.6.21>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최초로 준공된 건물 등의 준공일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여 대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6.21>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 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09.12.15, 2010.6.28, 2010.8.4, 2012.4.10, 2013.3.23>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제29조제4항제3호에 따른 대부계약의 조건에 따라 대부재산을 대부받은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3. 예정가격이 1건당 3천만원 이하인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4.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못 미치는 건물이 없는 토지의 인접 토지소유자가 1인인 경우 그 토지를 그 인접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5.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연립주택·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6. 「관광진흥법」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을 입주계획에 따라 정해진 지구에 입주하는 실수요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7.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지원 또는 권장하기 위하여 주택 또는 공공이용시설 부지로 사용하게 될 재산을 마을주민에게 매각하는 경우 및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8. 외교상 또는 국방상의 이유로 재산의 매각을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9.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가 발생하여 재해복구 또는 구호의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10.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을 이전하는 자에게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11. 주식의 매각을 투자매매업자·투자증개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12. 지방자치단체가 취급하던 업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포괄하여

이관하면서 이관되는 업무에 제공되고 있던 재산을 이관받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13. 지방자치단체가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사업을 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어린이육영단체에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1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그 목적사업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 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 라.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 마.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 바.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 사. 「전자정부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역정보개발원
15.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재산을 양여하거나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7조에 따라 용도가 정해진 토지를 그 정해진 목적에 사용하도록 해당 도시·군계획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17.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집단복지공장이 직접 사용할 업무용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18. 「농어촌정비법」 제82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로 조성된 재산을 농어민에게 매각하는 경우
19. 「농어촌정비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농공단지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해당 사업에 사용할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20. 재공고 입찰에 붙였으나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21.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에 따른 도서·벽지에 있는 학교를 폐지하는 경우
그 학교재산을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에 청소년교육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사업을 위하여 매각하는 경우
 22. 제21호에 따른 도서·벽지 외의 읍·면 지역에 있는 학교를 폐지하고 그 학교 재산을 학교법인에 매각하는 경우
 23.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으로 보아 입찰에 붙이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2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을 위하여 사업시행자, 점유자 또는 사용자에게 사업 시행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25.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2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봉안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27. 동일인 소유의 사유지에 둘러싸여 고립된 토지를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28.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제조업체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30명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해당 지역에서 조달하려는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경우
 29.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를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 ② 상반된 이해관계인 사이에 장기간에 걸쳐서 해결하기 극히 곤란한 사실상 또는 소송상 분쟁이 있는 재산이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찰로 매각하여야 한다. <개정 2010.8.4>

제45조(교환차금의 납부) ① 일반재산의 교환차금은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6.21>

②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6.21>

제81조(변상금) ① 법 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은 그 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무단으로 사용·수익한 기간에 대하여 회계연도별로 제14조 및 제31조에 따라 산정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 합계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변상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여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8.4, 2013.6.21>

제82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 법 제8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이자를 말한다. <개정 2013.6.21>